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7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이수진 · 민병덕 · 이기헌

김동아 • 최기상 • 이건태

김현정 · 정성호 · 추미애

김태년 · 임미애 · 김준혁

조 국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 중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되는데,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형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인 및 고객이 정기적으로 모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민속 5일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, 이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인 점포로 구성되지는 않으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민속 5일장 등에 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에 다수(多數)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 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의2). 법률 제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의2 중 "구역"을 "구역 또는 다수(多數)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2의2. "골목형상점가"란 「소상	2의2		
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			
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		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			
로 밀집하여 있는 <u>구역</u> 중 특	<u>구역 또는</u>		
별자치도・특별자치시・시・	다수(多數)의 수요자와 공급		
군・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	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		
다.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	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		
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	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		
한다.	<u>기여하는 구역</u>		
	,		
3. ~ 13. (생 략)	3. ~ 13. (현행과 같음)		